

행정처분기준(제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,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며, 4차 이상 위반할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
- 1) 해당 위반행위의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1개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(30일의 운영정지 처분을 포함한다)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4차 이상 위반에 대하여 1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한다.
- 2) 해당 위반행위의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3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공연활동정지 처분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4차 이상 위반에 대하여 6개월의 운영정지 또는 공연활동정지 처분을 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활동을 통하여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간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에 따른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		공연장운영자에 대	공연자에 대한 공연
--	--	-----------	------------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한 운영정지			활동정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1호	3일	7일	15일	1개월	3개월	6개월
나.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「청소년보호법」 제10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·부착 또는 배포하거나,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한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1호	경고	3일	7일	경고	1개월	3개월
다.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공연한 경우,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거나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2호	3일	7일	15일	15일	1개월	3개월
라.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3호	7일	15일	30일	1개월	3개월	6개월
마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4호	3일	7일	15일			
바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4호	경고	3일	7일			
사. 법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	법 제33조 제1항제5호	3일	7일	15일			

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대처계획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						
아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5호				1개월	3개월	6개월
자.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5호의2	3일	7일	15일	1개월	3개월	6개월
차. 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5호의3	7일	15일	1개월			
카.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, 등록 전 안전검사, 정기 안전검사,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6호	7일	15일	1개월			
타. 법 제40조제1호·제2호 또는 제41조에 따른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7호	1개월	3개월	6개월	3개월	6개월	6개월